



원본: 영어

No.: ICC-02/05-01/09

날짜: 2010년 7월 12일

제 1 예심원

담당: 판사 실비아 스타이너, 부장판사
판사 산지 음마세노노 모나겐
판사 쿠노 타르푸서

수단 다르푸르 사태

검찰 대(對) 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오마르 알 바시르) 건(件)

공개문건

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재판소 규정 31 조에 의거, 문건은 다음 당사자들에게 통보됨

검사실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검찰총장
에사 파알, 수석검사

변호인단

피해자 측 법정 대리인단

니콜라스 코프만
완다 엠 에이킨
레이몬드 엠 브라운

신청인 측 법정 대리인단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피해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조정 및 보상
신청인**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 사무실

파오리나 메시다

피고 측 국선 변호인 사무실

자비에-장 케이타

국가 측 대리인

법정 조연자

사무처

사무총장

실바나 알비아
디디에르 프레이라

변호 지원부

피해자 및 증인단

구치부

피해자 조정 및 보상부

피오나 맥케이

기타

국제 형사 재판소 제 1 예심원 (이후 각각 “예심원”, “재판소”)은;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 (“Darfur situation”)에 대한 기록에 근거하여 집단 학살과 반인륜적 범죄 및 전범 혐의로 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 (이후 “오마르 알 바시르”)를 체포하기 위해 2008 년 7 월 14 일 검찰 측이 발부 신청한 “Prosecution’s Application under Article 58” (“Prosecution’s Application”)을 심사하였고;¹

검찰 측에서 제시한 근거 자료와 기타 정보를 심사하였고;²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림에 있어 2009 년 3 월 4 일자 “Decision on the Prosecution’s Application for a Warrant of Arrest against Omar Hassan Ahmad Al Bashir” (“First Decision”)³을 인지하고:

(i) 법전 25 조 (3)항 (a)에 의거, 검찰 측에서 제기한 반 인륜적 범죄 및 전범 혐의로 오마르 알 바시르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⁴

¹ ICC-02/05-151-US-Exp ; ICC-02/05-151-US-Exp-Anxs1-89; 정정판 ICC-02/05-151-US-Exp-Corr 및 정정판 ICC-02/05-151-US-Exp-Corr-Anxs1 & 2; 및 공개용 개정판 ICC-02/05-157 및 ICC-02/05-157-AnxA.

² ICC-02/05-161 및 ICC-02/05-161-Conf-AnxsA-J; ICC-02/05-179 및 ICC-02/05-179-Conf-Exp-Anxs1-5; ICC-02/05-183-US-Exp 및 ICC-02/05-183-Conf-Exp-AnxsA-E.

³ ICC-02/05-01/09-3.

⁴ ICC-02/05-01/09-3, 92 쪽.

(ii) 검찰 측에서 열거한 기소 요인 중 살인에 의한 집단 학살 (기소요인 1),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집단 학살 (기소 요인 2), 해당 부족에 대한 물질적 손해를 야기하도록 의도적으로 조성된 환경에 의한 집단 학살 (기소 요인 3)에 해당하는 집단 학살 건은 체포 영장 발부에 적용된 범죄 행위에 포함시키지 않음;⁵

항소심 법원이 “잘못된 증거 기준(...)을 이유로 집단 학살 범죄 혐의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⁶하고 진술의 요지를 받아 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새로운 판결을 위해 정확한 증거 기준을 사용하도록 요구”⁸하며 첫 번째 판결을 예심원으로 파기 환송한 2010 년 2 월 3 일자 “Judgment on the Appeal of the Prosecutor against the ‘Decision on the Prosecution’s Application for a Warrant of Arrest against Omar Hassan Ahmad Al Bashir’” (“Appeals Decision”)⁹를 **인지하고**

GoS 군이_대(對) 게릴라 전의 일환으로 수행했던 작전을 통해 드러난 바를 근거로 법전 6 조 (a)와 6 조 (b), 6 조 (c)에 의거, 집단 학살 범죄에 대한 오마르 알 바시르의 간접 가해자 또는 간접 종범으로의 혐의가 법전 25 조 (3)항 (a)를 근거로 상당 수준 인정됨은 물론 로마 법전 (이후 “법전”) 58 조 (1)항 (b)에 따라 해당인의 체포가 필요하다고

⁵ 아니타 우삭카 판사, 부분적 소수 의견 개진

⁶ ICC-02/05-01/09-73, 3 쪽

⁷ ICC-02/05-01/09-73, 42 쪽.

⁸ 위와 같은 자료 같은 페이지.

⁹ ICC-02/05-01/09-73.

결정한 예심원 판결, “Second Decision on the Prosecution’s Application for a Warrant of Arrest”,¹⁰ (“Second Decision”)를 **인지하고** ;

법전 19 조 및 58 조를 **참조하여**;

법전 19 조에 의해 내려질 수 있는 모든 후속 판결과는 별개로, 검찰 측이 영장 청구와 함께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오마르 알 바시르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재판소에 있음을 **고려하였으며**,¹¹

현 단계에서 오마르 알 바시르에 대한 재판 권한을 결정하는 법전 19 조 (1)항에 의거, 검찰 측이 영장 청구와 함께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재판소의 결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분명한 이유와 자기 증거요소가 없음을 **고려하고**;¹²

(i) 2003 년 4 월 엘 파셔 공항에 대한 공격이 있는 직후, 수단 정부 (이후 “GoS”)는 다르푸르 내 SLM/A 와 JEM 및 기타 무장 반군 단체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잔자위드 민병대에 대규모 이동 명령을 하달하였으며, 이후 수단 육군과 동맹군인 잔자위드 민병대, 수단 경찰, 국가 정보국(이후 “NISS”) 및 인도적 지원위원회(이하 “HAC”)를

¹⁰ ICC-02/05-01/09-94.

¹¹ 예심원 첫 번째 판결에서 확인 가능, ICC-02/05-01/09-3, 단락 35-45 참조, 2 차 판결, 단락 41 에서 반복.

¹² 예심원 첫 번째 판결에서 확인 가능, ICC-02/05-01/09-3, 단락 51 참조, 2 차 판결, 단락 41 에서 반복.

포함한 GoS 군이 다르푸르 전역에서 상기 무장 반군 단체에 대한 대(對) 게릴라 전을 수행하였고; (ii) 이러한 대(對) 게릴라 전이 2008 년 7 월 14 일 검찰 측의 체포영장 청구일까지 계속되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

(i) 다르푸르 지역 내에서 진행 중이던 무력 충돌에서 GoS 에 대항하는 SLM/A 와 JEM 및 기타 무장 반군 세력에 동조한 것으로 간주된 다르푸르 지역 내 비무장 시민들, 주로 푸르, 마사리트, 지그하와 부족,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이 GoS 의 대 게릴라 전 주요 내용이었다는 점과; (ii) GoS 대 게릴라 전에서 공격 대상이 된 촌락과 마을의 선정이 인종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사실과 다른 부족이 거주하는 마을들은 반군 거점인 경우에도 공격받지 않고 푸르, 마사리트, 지그하와 부족의 비 무장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촌락과 마을이 공격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믿을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

일부 푸르, 마사리트, 지그하와 부족을 대상으로 자행된 GoS 의 공격 및 폭력 행위가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저질러졌으며 서로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는 사실로 미루어 그 대상이 된 부족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명하고 유사한 형태의 행위가 저질러졌음을 믿을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

상기 다르푸르 지역 내 일부 비무장 시민들에 대한 GoS 의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공격을 통해 GoS 군이 다르푸르 전 지역에 걸쳐 주로 푸르와 마사리트, 지그하와

부족에 속하는 수 천 명의 비 무장 시민들에 대한 살인과 인종청소 행위를 자행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¹³

GoS 가 상기 다르푸르 지역 내 일부 비무장 시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저지른 불법 공격에서 GoS 군이 다르푸르 전 지역에 걸쳐 (i) 주로 푸르와 마사리트, 지그하와 부족에 속하는 수 천 명의 민간인 여성들에 대한 강간을 자행하였으며;¹⁴ (ii) 동 부족들에 속하는 시민들에게 고문을 가했으며;¹⁵ (iii) 주로 푸르와 마사리트, 자그하와 부족민으로 이루어진 수 십만 명의 시민들에 대한 강제 이주를 실시하였다;¹⁶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

또한 GoS 가 상기 다르푸르 지역 내 일부 비무장 시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저지른 불법 공격에서 GoS 군이 다르푸르 전 지역에 걸쳐 (i) 주로 푸르와 마사리트, 지그하와

¹³ 주요 지역으로 (i) 코돔, 빈디시, 무크자르, 아라와라 시(市) 및 서(西) 다르푸르의 와디 사리, 무크자르, 가르시라-데레이그 지역 인접 촌락. 2003 년 8 월에서 12 월까지; (ii) 남(南) 다르푸르의 샤따야, 카이렉 마을. 2004 년 2 월과 3 월; (iii) 남(南) 다르푸르의 부람 지역 내 자그하와, 마사리트, 미세리야 자벨 마을과 촌락을 중심으로 89 에서 92 건. 2005 년 11 월에서 2006 년 9 월까지; (iv) 남(南) 다르푸르의 야신 지역 내 무하제리야 마을. 2007 년 10 월 8 일 경; (v) 서(西) 다르푸르의 콜버스 지역 내 시레아 마을과 사라프 지다드, 아부 수루즈, 시르바, 자벨 문 마을. 2008 년 1 월에서 2 월까지; (vi) 쉬게그 카로 및 알-아인 지역. 2008 년 5 월

¹⁴ 주요 지역으로 (i) 서(西) 다르푸르의 빈디시, 아라와라 시(市). 2003 년 8 월에서 12 월까지; (ii) 남(南) 다르푸르의 카이렉 마을. 2004 년 2 월과 3 월; (iii) 서(西) 다르푸르의 콜버스 지역 내 시레아 마을과 시르바 마을. 2008 년 1 월에서 2 월까지

¹⁵ 주요 지역으로 (i) 서(西) 다르푸르의 무크자르 마을. 2003 년 8 월; (ii) 남(南) 다르푸르의 카이렉 마을. 2004 년 3 월; (iii) 서(西) 다르푸르의 콜버스 지역 내 자벨 문 마을. 2008 년 2 월

¹⁶ 주요 지역으로 (i) 코돔, 빈디시, 무크자르, 아라와라 시(市) 및 서(西) 다르푸르의 와디 사리, 무크자르, 가르시라-데레이그 지역 인접 촌락. 2003 년 8 월에서 12 월까지; (ii) 남(南) 다르푸르의 샤따야, 카이렉 마을. 2004 년 2 월과 3 월; (iii) 남(南) 다르푸르의 부람 지역 내 자그하와, 마사리트, 미세리야 자벨 마을과 촌락을 중심으로 89 에서 92 건. 2005 년 11 월에서 2006 년 9 월까지; (iv) 남(南) 다르푸르의 야신 지역 내 무하제리야 마을. 2007 년 10 월 8 일 경; (v) 서(西) 다르푸르의 콜버스 지역 내 시레아 마을과 사라프 지다드, 아부 수루즈, 시르바, 자벨 문 마을. 2008 년 1 월에서 2 월까지

부족이 거주하는 촌락과 마을들을 공격하면서 우물과 수도를 오염시킨 적이 있으며;¹⁷
(ii) 주로 푸르와 마사리트, 자그하와 부족민으로 이루어진 수 십만 명의 시민들에 대한
강제 이주를 실시하였으며;¹⁸ (iii) GoS와 동맹 관계에 있는 다른 부족민들을 교사하여
주로 푸르와 마사리트, 자그하와 부족민이 이전에 거주하고 있던 마을과 토지를
점거하도록 부추겼으며;¹⁹ 대량 학살 정책을 조장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

따라서 법전 6 조 (a), (b), (c)에 각각 의거, 2003년 4월 엘 파셔 공항 공격 직후로부터
최소한 검찰 측의 체포영장 청구일까지 수단 육군과 동맹군인 잔자위드 민병대, 수단
경찰, NISS 및 HAC 를 포함한 GoS 군에 의해 일부 푸르와 마사리트, 자그하와
부족민에 대한 살인에 의한 집단 학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집단 학살,
물질적 손해를 야기하도록 의도적으로 조성된 환경에 의한 집단 학살 등의 범죄 행위가
자행되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

¹⁷ 인권을 위한 의사들, 보고서, 다르푸르 생존에 대한 공격, 안전과 정의, 제재에 대한 요구 (Anx J44) DAR-OTP-0119-0635 at 0679 상수원 파괴에 대한 세 가지 사례 언급.

¹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간행물, 22 April 2008 (Anx J38) DAR-OTP-0147-0859 at 0860;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5872 회의, 22 April 2008 (Anx J52) DAR-OTP-0147-1057 at 1061; UNCOI 자료, (Anx J72) DAR-OTP-0038-0060 at 0065; 다르푸르 주 내에서 무장 집단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혐의에 대한 위원회 조사, January 2005, Reviewed, Volume 2 (Anx 52) DAR-OTP-0116-0568 at 0604; 유엔 기구 간 보고서, 25 April 2004 (Anx J63) DAR-OTP-0030-0066 at 0067; 수단 사태에 따른 인권문제를 다룬 유엔 고위 인권위원회 3 차 정기 보고서, April 2006 (Anx J75) DAR-OTP-0108-0562 at 0570-0572, 단락 27, 35, 39, 44;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회의 주위가 요구되는 인권 상황 보고서 (A/HRC/6/19) (Anx 78) at D AR-OTP-013 8-0116 at 0145-0146; HRW 보고서, 그들은 달아나는 우리를 향해 발포했다, 18 May 2008, (Anx 80) DAR-OTP-0143-0273 at 0300, 0291-0296; 유엔 고위 인권위원회 9 차 정기 보고서. 수단 (Anx J76) DAR-OTP-0136-0369 at 0372-0374.

¹⁹ 증인 진술 (AnxJ47) DAR-OTP-0125-0665 at 0716, 단락 255.

오마르 알 바시르가 2003년 3월부터 최소한 검찰 측의 체포영장 청구일인 2008년 7월 14일까지 합법적이며 사실상의 수단 대통령 겸 군 참모총장이었다는 점과 그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수단 고위 관료 및 군부 지도자들과 함께 상기 언급한 GoS의 대게릴라 전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

나아가 예심원은 대안으로 (i) 오마르 알 바시르의 역할이 전반적인 작전의 계획과 실행에 협조하는 단계를 넘어서; (ii) 그가 수단 육군과 동맹군인 잔자위드 민병대, 수단 경찰, NISS 및 HAC 등 수단 공화국의 “국가 조직” 모든 부분을 완전히 장악하고; (iii) 이를 통해 해당 작전의 실행을 확실히 통제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찾아 이를 고려하고;

항소 법원을 통해 확인된 증거 기준을 근거로 오마르 알 바시르가 일부 푸르와 마사리트, 자그하와 부족민들의 살해에 대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

상기 이유들과 함께 법전 25조 (3)항 (a)를 근거로 오마르 알 바시르의 아래 범죄행위에 대한 간접 가해자 또는 간접 중범 혐의가 상당 수준 인정됨을 고려하여;

- i. 법전 6조 (a)의 해석에 따라 살인에 의한 집단 학살;
- ii. 법전 6조 (b)의 해석에 따라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집단 학살;
- iii. 법전 6조 (c)의 해석에 따라 물질적 손해를 야기하도록 의도적으로 조성된 환경에 의한 집단 학살;

법전 58 조 1 항에 의거, 현 단계에서 오마르 알 바시르의 체포가 (i) 그의 재판소 출두를 위해서; (ii) 법전에 의거, 그의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 진행이 위협받거나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iii) 상기 범죄를 반복해서 자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상기 이유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영장을 발부한다:

오마르 알 바시르에 대한 체포영장: 남성, 수단 국적, 1944 년 1 월 1 일 수단 쉐디 행정구 호쉬 바나가 출생, 북부 수단의 자아리 부족원, 1993 년 10 월 16 일 RCC-NS 의 지명으로 수단 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 1996 년 4 월 1 일 이후 연속으로 대통령으로 선출, 오마르 알-바시르, 오메르 하산 아메드 엘 바시레, 오마르 알-바시르, 오마르 알-베시르, 오마르 엘-바시르, 오메르 알바시어, 오마르 엘바시르, 오마르 하산 아마드 엘-베시르 등으로도 표기.

영어, 아랍어, 불어로 작성되었으며 영문판이 공식문건.

/서명/

판사 실비아 스타이너
부장판사

/서명

/서명

판사 산지 음마세노노 모나경

판사 쿠노 타푸서

2010년 7월 12일 월요일

네덜란드

헤이그